

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5. 10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5월 3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5. 10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연수)

- 가. 제안이유
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세율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함
(안 제17조, 안 제18조, 안 제22조)
- 나.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주택분재산세, 건물분재산세,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, 각각의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보완함 (안 제3조, 제21조, 제23조)
- 다.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구조의 변경에 따른 세율을 정비함
(안 제21조의2)
- 라.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삭제함 (안 제29조)

4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- 5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- 6. 討 論 要 旨 : 없 음
- 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- 8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- 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